

회의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연구*

중앙행정기관 지정회의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Open Meeting System

: Focused on the Central Administrative Organization Designated Meeting

최정민(Choi, Jeong Min)** · 김유승(Kim, You-seung)***

1. 시작하는 글
2. 선행 연구 분석
3. 우리나라 회의록 생산 및 공개 관련 제도
4. 중앙행정기관 지정회의 현황 분석
5. 지정회의 운영 분석
 - 1) 지정회의 연도별 회의개최 수와 회의록 작성 유무
 - 2) 회의 형태, 회의록 작성 형태, 공개여부와 비공개 사유
6. 지정회의 운영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7. 맺는 글

* 본 연구는 재단법인 동천의 '2017년 하반기 공익·인권 단체 프로그램(활동/연구) 지원 사업'의 지원으로 이루어진 것임.

** 서강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대우교수(mingg11@gmail.com) (제1저자).

*** 중앙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kimyus@cau.ac.kr) (교신저자).

■ 투고일 : 2018년 1월 8일 ■ 최초심사일 : 2018년 1월 15일 ■ 게재확정일 : 2018년 1월 20일

〈초록〉

본 연구는 중앙행정기관의 지정회의 현황과 지정회의 연도별 개최수, 지정회의별 회의록 작성 유무와 작성 형태(요지작성, 속기록, 녹음기록), 회의록 공개 여부와 비공개시 비공개 사유 등을 분석하였다. 분석을 통해 도출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 번도 개최되지 않은 회의, 대면회의는 개최되지 않고 서면회의만 개최한 회의가 있었다. 지정 회의가 개최되어야 하는 기준 등이 확립되어야 한다. 둘째, 서면회의만 있을 경우 회의록을 따로 작성하지 않아 회의록이 없었다. 필요한 경우 서면회의를 하는 것은 가능하나, 서면회의라도 회의록에 준하는 수준으로 세부 사항에 대한 기록을 남겨야 한다. 셋째, 회의록 유형 가운데 요지작성이 선호되고 있었다. 합당한 사유로 비공개하더라도 요지작성 이외에 속기록, 녹음기록 작성의 의무가 정착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회의, 회의록이 비공개 되는 절차 및 사유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지정회의, 지정회의 회의록 관련 기준 및 절차의 정비를 통해, 생산, 관리 중심의 관점에서 공개, 공유 관점으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주제어 : 정보공개, 정보공개법, 지정회의, 회의공개, 회의공개법

〈Abstract〉

This study analyzes the status of the designated administrative meetings of the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including the number of meetings, the presence of written minutes, and the form of minutes. The implications based on the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there were meetings that were not held, and written meetings were held. The standards for determining the designated meetings should be established. Second, when only a written meeting was held, the minutes were not made because these were not written separately. A written meeting can be held, if it is necessary. However, there is still a

need to keep a detailed record similar to minutes in such cases. Third, among the minute types, a written record of the points of the meeting is preferred. Even if the meeting is closed for proper reasons, making a transcript and a record in addition to writing the points must be settled. Finally, specific standards for the procedures and reasons why meetings and minutes should be closed should be established. It is necessary to change the paradigm from the viewpoint of production and management to the viewpoint of disclosure and sharing through the improvement of standards and procedures related to designated meetings and designated meeting minutes.

Keywords : Freedom of information, freedom of information act, designated open meeting, open meeting, open meeting act

1. 시작하는 글

1996년 12월 31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 제정되었다. 그리고, 20년의 시간이 흘렀다. 1년의 유예 기간을 보내고,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정보공개법』은 정부에 대한 시민의 청구권을 보장하는 법적 근거로서 시민의 알권리를 증진시키는 제도로 자리 잡고 있다.

1998년 26,338건이었던 정보공개청구 건수는 2016년 756,342건으로 약 29배 증가하였으며,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전부공개율은 88%에 달하게 되었다(행정자치부 2017, 15, 21). 2004년 『정보공개법』의 전부개정은 정보공개심의회의 설치와 행정정보의 공표에 관한 규정 등을 골자로 참여와 공유라는 정보공개제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 바 있으며, 개정법의 일환으로 2006년 전자적 정보공개청구 창구인 ‘열린정부’

(www.open.go.kr) 서비스가 개시되었다.

『정보공개법』이 성년을 맞는 동안 긍정적 발전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특히,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기의 비공개, 비밀주의 관행은 정보공개제도를 크게 퇴보시켰다. 참여연대(2011)는 「이명박 정부 정보공개제도 운영 모니터 보고서 2011」을 통해, 정보공개제도 운영의 퇴행적 행태를 비판한 바 있다. 핵심 권력기관인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의 2015년 전부공개율은 각각 43%와 19%에 불과했다. 그러나 이러한 비공개, 비밀주의는 오히려 시민운동, 언론, 연구자 등 전문 집단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에게까지 정보공개 청구권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2014년 세월호 참사의 진실에 다가서려는 시민들의 알권리를 외면하였던 박근혜 정부는 촛불 시민들의 의해 결국 물러나게 되었다.

역정의 시간을 지나 성년의 나이를 맞이한 『정보공개법』은 시민의 정보공개 청구권을 보장하는 기본법이라는 큰 의미를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한계로 비판받고 있다. 특히, 의사결정, 정책수립 등을 비롯하여 시민의 참여가 필수적인 행정 행위의 과정에 대한 비공개 관행은 좀처럼 개선되지 않는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하지만 현행 『정보공개법』은 공공기관의 의사결정 및 정책수립 과정에 수반되는 회의의 공개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공공기관의 회의 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법령은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관리법』) 제17조와 동법 시행령 제18조가 유일하다. 특히, 시행령 제18조는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지정한 회의에 한하여, 회의록과 함께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을 생산토록 하고 강제하고 있다.

본 연구는 지정회의 제도와 그 기록에 주목한다. 이에 법령상의 지정회의 현황을 파악하고, 중앙행정기관별 지정회의 연도별 개최수, 지정회의별 회의록 작성 유무와 작성 형태(요지작성, 속기록, 녹음기록), 회의록 공개

여부와 비공개시 비공개 사유 등을 분석한다. 이를 통해, 현행 지정회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회의공개제도 도입을 위한 정책적 함의를 논하고자 한다.

2. 선행 연구 분석

기록학 연구에서 상대적으로 많지 않은 정보공개 관련 연구 중에서도 회의 공개를 주제로 다룬 연구는 불과 몇 편에 그치고 있다.

변주연(2008)은 ‘공공기관의 회의록 생산, 공개 제도화 연구’에서 회의록 생산, 공개 현황을 바탕으로, 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앞선 제도인 미국의 회의공개법을 고찰하여 우리나라를 위한 제도적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다만, 이 연구는 2000년부터 2005년까지의 회의록 생산, 공개 현황 정보를 바탕으로 하고 있어, 2004년과 2006년에 각각 전부개정된 『정보공개법』과 『공공기록물관리법』의 환경을 반영하지 못한 시기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혜진, 정은경(2012)은 ‘공공기관의 회의록 생산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에서 미국, 호주, 우리나라의 회의록 생산 및 공개에 관한 사례를 살피고, 2006년부터 2010년까지의 54개 지정회의를 분석하였다. 시기적으로 변주연(2008)의 후속 연구의 성격을 지닌 이 연구는 매뉴얼 작성, 회의록 생산을 위한 운영 체계 마련 등의 제도적 측면과 회의록 유형을 알 수 있는 파일명 생성, 회의록 정확성 확보, 회의록 공개 절차의 마련, 회의록 생산을 위한 교육 등 운영 측면으로 선행연구보다 진전된 구체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이후, 변주연(2008), 이혜진, 정은경(2012)의 후속 연구는 전무하다. 관련 주제의 최근 연구성과는 기록학 영역이 아닌, 법학 영역에서 나왔다. 손태

규(2015)는 ‘왜 한국에도 회의공개법이 필요한가?’라는 직설적 논제를 통해, 미국 회의공개법의 입법 역사와 배경, 그리고 입법 현황과 내용에 대한 논의를 통해 우리나라에서 회의공개법 입법의 가능성을 모색하였다. 우리나라 정보공개법 관련 법리와 입법역사, 서울시의 회의공개법 제정 시도 과정 등을 살펴봄으로써 회의공개법 제정 가능성을 논하였다.

그외 관련 연구성과로는 국회 회의록을 다룬 두 편의 연구가 있다. 윤대근, 남태우(2011)는 ‘국회 회의록의 관리체계에 관한 연구’에서 의회제도에 대한 오랜 역사를 가진 주요 국가들의 회의록 관리 사례와 우리나라 국회 회의록의 관리사례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국회 회의록 관리체계 및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김장환(2013)은 ‘국회 비공개회의록 및 불개재 부분의 공표 방안 연구’에서 미국과 영국의 비공개회의록 공개와 관련 법제도를 살펴보고, 2004년 국회기록물관리위원회의 심의, 의결 결과와 같은 해 정청래 의원이 발의한 규칙안을 토대로 비공개회의록과 불개재 부분의 공표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관통한 2008년부터 2015년까지 최근 8년간의 지정회의 현황 분석을 바탕으로 시민주권시대에 요구되고 있는 회의공개제도의 함의를 논하였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별점을 찾고자 한다.

3. 우리나라 회의록 생산 및 공개 관련 제도

2017년 현재 우리나라에서 회의 기록의 생산과 공개를 규정한 현행 법령 조항은 『공공기록물관리법』 제17조와 동법 시행령 제18조가 유일하다. 『정보공개법』은 회의 또는 회의록의 공개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언급하고 있지 않다. 오히려 제9조 제1항 제5호에서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

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를 비공개대상 정보로 규정함으로써, 주요 의사결정과정인 회의 또는 회의록 비공개의 근거만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 『정보공개법』의 주요 골자와 내용은 미국 정보공개법과 상당한 유사성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정보공개제도가 정보공개법(Freedom of Information Act, 5U.S.Code §552)과 선사인법이라 불리는 회의공개법(Government in the Sunshine Act, 5U.S.Code §552b)의 양날개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은 사뭇 대조되는 대목이다.

미국 회의공개법이 회의 관련 기록의 공개보다 회의 자체의 공개에 무게 중심을 두고 있는 반면, 별도의 회의공개법을 제정하지 않은 우리나라의 법령은 회의 자체의 공개는 커녕 회의 관련 기록의 공개에도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공공기록물관리법』 제17조 제2항은 공공기관에 주요회의의 회의록,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 작성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이의 공개에 관하여 일반적 공공기록물에 적용되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비공개 기간을 별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다. 이에 『공공기록물관리법 시행령』 제18조는 회의의 속기록 또는 녹음 기록의 “일부를 보존기간의 기산일부터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비공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대통령이 참석한 회의의 경우에는 “보존기간의 기산일부터 1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보공개법』을 넘어서 공개 기준과 기간의 설정은 『공공기록물관리법』 제17조 제2항의 목적이 공개가 아닌 “기록물의 원활한 생산 및 보호”에 있음을 반증해주고 있다.

반면, 법령상 회의록 의무 생산 대상 회의의 범주는 ‘대통령이 참석하는 회의’, ‘국무총리가 참석하는 회의’, ‘주요 정책의 심의 또는 의견조정을 목적

으로 차관급 이상의 주요 직위자를 구성원으로 하여 운영하는 회의', '정당과의 업무협의를 목적으로 차관급 이상의 주요 직위자가 참석하는 회의', '개별법 또는 특별법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 또는 심의회 등이 운영하는 회의',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교육장이 참석하는 회의', 「『공공기록물관리법』 제17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심의 또는 의견조정을 목적으로 관계기관의 국장급 이상 공무원 3인 이상이 참석하는 회의', '그 밖에 회의록의 작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요 회의' 등 8가지 유형으로 상당히 광범위하다.

하지만, 회의록 의무 생산 규정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지속되어 왔다. 회의 내용을 충실히 담아내지 못하는 부실 회의록 생산뿐만 아니라, 회의록 자체를 남기지 않는 관행까지 다양한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2018년 1월, 국가기록원은 4대강 사업, 자원외교, 세월호 참사 등 국민적 관심이 높은 기록의 생산, 관리 현황 실태 점검을 통해, 다수의 기관들이 회의록 자체를 생산하지 않았음을 밝힌 바 있다. 4대강 사업과 해외자원개발 투자 심의 등 주요 정책결정 과정에서 수십 차례의 회의를 개최하고도 회의록을 남기지 않았다는 것이다(김승두 2018). 법령이 부과한 의무가 지켜지지 않는 안타까운 상황에서, 의무 대상 범주의 광범위성은 오히려 실효성에 대한 의문으로 귀결되고 있다.

이에,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회의록 실효성을 담보하고자 마련된 제도가 소위 지정회의 제도라 할 수 있다. 『공공기록물관리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지정한 회의는 회의록뿐만 아니라,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까지를 생산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이러한 회의가 녹음기록으로 남았을 경우, 녹취록을 함께 생산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록물관리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 의해 회의록 생산 의무를 부여 받은 회의 중, '정당과의 업무협의를 목적으로 차관급 이상의 주요 직

위자가 참석하는 회의'와 '심의 또는 의견조정을 목적으로 관계기관의 국장급 이상 공무원 3인 이상이 참석하는 회의'는 지정회의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음에서는 영구기록물관리기관, 즉 국가기록원의 장이 지정 및 관리하고 있는 지정회의 관련 기록의 운영현황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4. 중앙행정기관 지정회의 현황 분석

본 연구는 2017년 4월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2008년~2016년까지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2항에 의거한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회의”에 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구체적으로 기관명 및 회의명을 포함한 지정현황 목록, 개별 지정회의의 연도별 회의 개최 횟수, 회의록 작성 유무, 회의록 작성 형태, 공개 여부, 비공개 사유 등의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다음의 분석은 이상의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취득한 자료를 근거로 한다.

참석자 또는 운영주체 별로 지정회의를 구분해보면 <표 1>과 같다. <표 1>은 '2014년 속기록 작성 대상 회의 지정 계획(안)'에 정리된 속기록 작성 의무 회의 현황이며 폐지된 회의, 신규회의를 반영하였다. 당시 '대통령이 참석하는 회의' 8개, '국무총리가 참석하는 회의' 20개, '주요 정책심의 또는 의견조정을 목적으로 한 차관급 이상 구성원인 회의' 23개, '개별법 또는 특별법에 따라 구성된 회의 또는 심의회 등이 운영하는 회의' 28개로 총 79개 회의가 속기록 작성 의무 회의로 지정되어 있었다. 이 가운데 대통령이 참석하는 회의 8개는 연도별 개최수, 회의록 작성 유무 등이 '정보부존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지정회의 관련 정보가 부존재한 상황은 지정회의 관리의 부실, 나아가 대통령기록 관리의 부실을 반증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더 이상의 세부 분석이 불가한 대통령이 참석하는 회의를 제외한 총 71개 회의를 분석대상으로 한다.

〈표 1〉 지정회의 현황

구분	대상회의
대통령이 참석하는 회의 (8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국가인적자원위원회, 국가안전보장회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전체회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국민경제자문회의, 문화융성위원회, 통일준비위원회
국무총리가 참석하는 회의 (20개)	녹색성장위원회, 유비쿼터스도시위원회,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원자력진흥위원회, 사회보장위원회,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바이오안전성위원회, 산업기술보호위원회, 5·18 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지원위원회, 서해5도 지원위원회, 자원봉사진흥위원회, 중앙민방위협의회, 중앙안전관리위원회,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여성정책조정회의, 6·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 명예회복위원회,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
주요 정책심의 또는 의견조정을 목적으로 한 차관급 이상 구성원인 회의 (23개)	고용정책심의회, 소비자정책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의, 국가교통위원회, 경제관계장관회의, 시도경제협의회,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위원회,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어업인등 지원위원회,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위원회, 생명공학융합정책심의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한세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 경제자유구역위원회, 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 외국인투자위원회, 항공우주산업개발정책심의회, 기부심사위원회, 도서개발심의위원회, 정보공개위원회,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 남북관계발전위원회,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개별법 또는 특별법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 또는 심의회 등이 운영하는 회의 (28개)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 학자금대출제도심의위원회,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군무회의, 국방부 정책회의,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농축산물무역정책심의회, 중앙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축산발전심의위원회, 방 송통신위원회 전원회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무역위원회, 공무원연금여재심사위원회, 공무원연금운영위원회, 국가기록관리위원회, 기록물공개심의회, 기록물평가심의회,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 순직보상심사위원회, 승강기사고조사판정위원회, 중앙도로명주소위원회,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청소년보호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합정 항공기 등 규격 및 장비선정 심의 위원회, 수산생물질병방역협의회

※출처 : 2014년 속기록 작성 대상 회의 지정 계획(안) 수정.

대통령이 참석하는 회의를 제외한 지정회의 현황을 기관별로 살펴보면 <표 2>와 같다. 행정자치부가 국가기록관리위원회를 비롯하여 14개 지정회의를 가지고 있어 가장 많고, 다음으로 산업통상자원부 7개 지정회의, 보건복지부 6개, 농림축산식품부 5개, 국민안전처와 미래창조과학부 4개 순으로 지정된 회의가 많다. 2개의 지정회의를 운영하고 있는 기관으로는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가 있다. 그 외 국무총리실, 국가인권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위사업청이 각각 1개의 지정회의를 운영하고 있었다.

<표 2> 중앙행정기관별 회의명

기관	회의명	기관	회의명
국무총리실	녹색성장위원회	보건복지부 (6)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의회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전원의회의		사회보장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2)	공정거래위원회 전원의회의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금융위원회 (2)	금융위원회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한센인피해시간진상규명위원회
국민안전처 (4)	승강기사고조사판정위원회	산업통상 자원부 (7)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중앙민방위협의회		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
	중앙안전관리위원회		무역위원회
	함정 항공기 등 규격 및 장비선정 심의 위		바이오안전성위원회
인사혁신처 (3)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		산업기술보호위원회
고용노동부	공무원연금운영위원회		외국인투자위원회
교육부	순직보상심사위원회		항공우주산업개발정책심의회
국방부 (3)	국방부 정책회의	여성가족부 (3)	양성평등위원회
	군무회의		청소년보호위원회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통일부 (3)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남북관계발전위원회
			6·25전쟁남북피해진상규명및남 북피해자명예회복위원회

국토교통부 (2)	국가교통위원회 유비쿼터스도시위원회	해양수산부 (2)	수산생물질병방역협의회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어업 인등 지원위원회	
기획재정부 (2)	경제관계장관회의 시도경제협의회		국가기록관리위원회 기록물공개심의회 기록물평가심의회 기부심사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5)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 농축산물무역정책심의회	행정자치부 (14)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 도서개발심의위원회 서해5도지원위원회 자원봉사진흥위원회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인 등 지원위원회 중앙농업·농촌맞시품산업정책심의 회 축산발전심의위원회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2)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 10·27법난피해자 명예회복심의위원 회	정보공개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 (4)		국가과학기술심의회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위원회 생명공학융합정책심의회 원자력진흥위원회	중앙도령명주소위원회 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 회 행정협의조정위원회
방위사업청			방위사업추진위원회	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지원위원 회

5. 지정회의 운영 분석

1) 지정회의 연도별 회의개최 수와 회의록 작성 유무

이하에서는 ① 국무총리가 참석하는 회의, ② 주요 정책심의 또는 의견 조정을 목적으로 한 차관급 이상 구성원인 회의, ③ 개별법 또는 특별법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 또는 심의회 등이 운영하는 회의 등 회의 유형에 따라 연도별 지정회의 개최수, 회의록 작성유무 등을 분석하고자 한다.

〈표 3〉에서 ‘국무총리가 참석하는 회의’를 보면 2001년 지정된 회의가 2 건, 2005년 1건, 2009년 4건, 2011년 4건, 2013년 9건이다. 개최 되지 않아

회의록 작성유무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바이오안전성위원회, 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지원위원회)를 제외하고 모두 회의록을 작성하였다.

회의 개최수를 보면, 20개 회의 중 5개 회의가 10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였다.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2011년 지정), 양성평등위원회(2005년 지정), 6·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위원회(2011년), 국가과학기술심의회(2001년), 사회보장위원회(2009년)이다.

이중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2011년 지정)가 15회 개최로 가장 많다. 지정회의가 된 이후 매년 꾸준히 회의를 개최한 회의는 6개 회의(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양성평등위원회,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6·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명예회복위원회, 서해5도지원위원회,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에 불과하다. 또한 한 번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회의(중앙민방위협의회, 바이오안전성위원회, 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지원위원회)도 있다.

〈표 3〉 '국무총리가 참석하는 회의' 연도별 개최수와 회의록 작성유무

기관명	대상회의	지정 연도											총 수	회의록 작성유무
			08	09	10	11	12	13	14	15				
국무총리실	녹색성장위원회	2009		0	0	0	0	2	0	2	4	4	○	
국민안전처	중앙민방위협의회	2013							■	0	0	3	★	
	중앙안전관리위원회	2013							■	3	3	0	○	
국토교통부	유비쿼터스도시위원회	2011				0	0	0	0	1	1	1	○	
농림축산 식품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	2009		1	1	1	2	0	3	1	9	9	○	
문화체육 관광부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	2011				2	1	0	2	10	15	15	○	
미래창조 과학부	국가과학기술심의회	2001	■	■	0	0	■	4	3	4	11	11	○	
	원자력진흥위원회	2001	■	■	0	2	■	1	0	2	5	5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2009		0	0	0	0	5	4	2	11	11	○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2009		1	1	2	2	1	1	1	9	9	○	
	아동정책조정위원회	2013						0	1	3	4	4	○	

산업통상 자원부	바이오안전성위원회	2013					■	■	0	0	★	
	산업기술보호위원회	2011			0	0	■	■	3	3	○	
여성가족부	양성평등위원회	2005	2	2	1	1	2	2	2	2	12	○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2013						1	3	2	6	○
통일부	6·25전쟁남북피해진상규명 및남북피해자명예회복위원회	2011				1	1	4	5	1	12	○
행정자치부	서해5도지원위원회	2013						1	1	2	4	○
	자원봉사진흥위원회	2013						1	0	1	2	○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	2013						1	1	2	4	○
	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 상지원위원회	2013						0	0	0	0	★

■ : 해당 연도 미지정

■ : 부처에서 회의록을 미제출한 경우

★ : 개최회수가 없어 회의록 작성 유무 확인 곤란

〈표 4〉는 ‘주요 정책심의 또는 의견조정을 목적으로 한 차관급 이상 구성원인 회의’의 회의 개최수와 회의록 작성유무다. 차관급 이상 구성원인 회의 역시 개최 되지 않아 회의록 작성유무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회의록을 작성하였다.

2001년에 속기록 작성 대상 회의로 지정된 회의는 6건, 2005년 3건, 2009년 5건, 2013년 9건이다. 23개 회의 중 9개 회의가 10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 전원회의(2005년 지정)는 지정된 이후 총 158회 개최하였고 경제관계장관회의(2005년 지정)는 91회 개최되었다. 지정된 이후 매년 꾸준히 회의를 개최하고 있는 회의는 국가인권위원회 전원회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위원회,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기부심사위원회, 정보공개위원회,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 등 6개다.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2013년 지정)와 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2013년 지정)는 해당 기간 동안 회의가 한 번도 개최되지 않았다.

〈표 4〉 ‘차관급 이상 구성원인 회의’ 연도별 개최수와 회의록 작성유무

기관명	대상회의	지정 연도	연도												총 수	회의록 작성유무
			08	09	10	11	12	13	14	15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전원회의	2005	■	24	19	23	24	23	21	24					158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위원회	2001	0	0	1	2	2	0	■	1				6	○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심의회	2005	■	■	2	4	■	■	■	3				9	○	
국토교통부	국가교통위원회	2001	0	0	0	0	0	0	0	2				2	○	
기획재정부	경제관계장관회의	2005	0	0	0	0	0	25	37	29				91	○	
	시도경제협의회	2001	0	1	1	1	1	2	2	1				9	○	
농림축산식품부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위원회	2009		0	0	0	1	3	2	4				10	○	
미래창조과학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위원회	2013							4	4	1			9	○	
	생명공학융합정책심의회	2001	■	■	0	1	■	1	1	1				4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심의회위원회	2009		0	8	0	0	0	0	0				8	○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	2013							0	0	0			0	★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위원회	2013							■	■	11			11	○	
	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	2013							■	■	0			0	★	
	외국인투자위원회	2001	■	0	4	5	3	■	■	7				19	○	
통일부	항공우주산업개발정책심의회	2001	■	0	0	0	0	■	■	1				1	○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2013							9	10	11			30	○	
해양수산부	남북관계발전위원회	2009		0	0	0	0	1	1	1				3	○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어업인등 지원위원회	2009		0	0	0	0	0	0	2				2	○	
행정자치부	기부심사위원회	2013							3	4	6			13	○	
	도서개발심의회위원회	2013							0	0	1			1	○	
	정보공개위원회	2013							2	2	2			6	○	
방위사업청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	2013							6	4	7			17	○	
	방위사업추진위원회	2009		■	9	7	8	10	12	8				54	○	

〈표 5〉에 따르면, ‘개별법 또는 특별법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 또는 심의회 등이 운영하는 회의’ 중 2009년에 속기록 작성 대상으로 지정된 회의는

13건, 2011년 1건, 2013년 13건이다. 전체 28개 회의 중 절반이 넘는 14개 회의가 10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였다.

지정회의로 정해진 ‘개별법 또는 특별법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 또는 심의회 등이 운영하는 회의’는 국무총리나 차관급 이상 구성원이 참여하는 회의보다 회의 개최수가 비교적 많은 편이다.

‘방송통신위원회 전원회의’는 2009년에 속기록 작성 대상 회의로 지정되었고 7년 동안 410회 회의를 개최하여 가장 많은 회의를 개최하였다. 지정 연도는 다르지만 해당 기간 동안 100이상 개최한 회의는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2009년) 177회, 금융위원회(2009년) 168회, 증권선물위원회(2009년) 133회다. 지정된 이후 매년 꾸준히 회의를 개최한 회의는 국방부 정책회의, 군무회의, 농축산물무역정책심의회, 국가기록관리위원회, 기록물평가심의회,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 중앙도로명주소위원회 등 7개 회의다. 수산생물 질병방역협의회는 2013년 지정된 이후 한 번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다.

〈표 5〉 ‘개별법, 특별법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 심의회 등이 운영하는 회의’ 현황

기관명	대상회의	지정연도	연도									총수	회의록작성유무
			08	09	10	11	12	13	14	15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전원회의	2009		■	80	77	72	46	61	74	410	○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	2009		30	25	30	22	25	■	45	177	○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2009		■	24	40	36	28	30	10	168	○	
	증권선물위원회	2009		■	22	24	29	23	25	10	133	○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2013							■	21	21	○	
국민안전처	승강기사고조사판정위원회	2013							■	12	12	○	
	함정 항공기등 규격 및 장비선정 심의회	2013							■	3	3	○	
인사혁신처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	2013							■	9	9	○	
	공무원연금운영위원회	2013							■	3	3	○	
	순직보상심사위원회	2013							■	3	3	○	

교육부	학자금지원제도심의위원회	2013						0	0	9	9	○
국방부	국방부 정책회의	2009		5	4	5	6	5	8	9	42	○
	군무회의	2009		2	2	2	2	3	2	1	14	○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	2013						0	9	0	9	○
농림축산식품부	농축산물무역정책심의회의	2009		1	5	0	1	3	1	4	15	○
	중앙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2009		0	0	0	0	0	1	1	2	○
	축산발전심의위원회	2009		0	1	2	0	0	1	1	5	○
문화체육관광부	10·27법난피해자 명예회복심의위원회	2011				0	0	3	8	12	23	○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2009		1	8	11	0	0	20	11	51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2009		11	12	12	13	■	■	15	63	○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위원회	2009		0	10	11	12	12	9	13	67	○
해양수산부	수산생물질병방역협의회	2013						0	0	0	0	★
행정자치부	국가기록관리위원회	2013						4	4	6	14	○
	기록물공개심의회의	2013						0	6	3	9	○
	기록물평가심의회의	2013						1	1	1	3	○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	2013						4	3	1	8	○
	중앙도로명주소위원회	2013						3	3	3	9	○
	행정협의조정위원회	2009		0	0	1	1	0	1	0	3	○

전체적으로 보면, 개최회수가 없어 회의록 작성 유무 확인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회의록을 작성하였다. 100회 이상 회의를 개최는 주로 개별법 또는 특별법에 따른 회의인데, 100회 이상 회의를 개최한 5개 회의 중 차관급 이상 구성원인 회의는 ‘국가인권위원회 전원회의’뿐이다.

한 번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회의는 2013년도에 지정된 6개 회의인데, 이중 5개 회의는 국무총리와 차관급 이상 구성원이 참석하는 회의다.

지정회의는 속기록을 작성해야하는 회의로 정해질 만큼 중요한 회의일 텐데, 정해진 이후 한 번도 회의를 하지 않은 것은 지정회의를 정하는 기준

에 대한 의문이 드는 부분이다.

2) 회의 형태, 회의록 작성 형태, 공개여부와 비공개 사유

다음에서는 ‘국무총리가 참석하는 회의’, ‘차관급 이상 구성원인 회의’, 그리고 ‘개별법, 특별법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 심의회 등이 운영하는 회의’들의 ① 회의 형태, ② 회의록 작성 형태, ③ 공개여부와 비공개 사유를 살펴보았다.

일반적으로 서면회의인 경우에는 회의록을 따로 작성하지 않는다. <표 7>에서, 국무총리가 참석하는 회의를 보면, 서면회의만 개최되었거나(유비쿼터스도시위원회, 바이오안전성위원회, 서해5도지원위원회, 접경지역정책심의회) 회의가 열리지 않는 회의(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지원위원회)는 회의록 작성형태나 공개 여부를 알 수 없다.

회의 형태를 ‘알수 없음’에는 서면/대면의 구분 없이 회의수만 있는 경우다(녹색성장위원회, 사회보장위원회,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산업기술보호위원회). 대면회의가 서면회의보다 더 많이 개최된 회의는 20개 회의 중 4개 회의로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원자력진흥위원회,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양성평등위원회다.

국무총리가 참석하는 회의는 회의별로 회의록 작성형태는 다양하나 주로 요지작성 위주다. 회의록 작성형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① 요지작성만 하는 경우 5건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 사회보장위원회,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산업기술보호위원회, 자원봉사진흥위원회), ② 속기록만 작성하는 경우 3건 (중앙안전관리위원회,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 원자력진흥위원회), ③ 녹음기록만 작성하는 경우 1건 (6·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위원회), ④ 요지작성, 속기록으로 작성하는 경우 2건 (자원봉사진흥위원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 ⑤ 요지작성, 녹음기록으로 3건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양성평등위원회,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⑥ 세 가지 형태를 모두 작성하는 경우 1건 (녹색성장위원회), ⑦ 서면회의만을 진행하거나 개최건수가 없어 회의록 형태가 없는 경우 5

건 (유비쿼터스도시위원회, 바이오안전성위원회, 서해5도 지원위원회, 접경 지역정책심의위원회, 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지원위원회)가 있다.

회의록 공개여부를 보면, 공개하는 회의록은 6건(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 사회보장위원회, 장애인 정책조정위원회,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자원봉사진흥위원회), 부분공개하는 회의는 1건(중앙안전관리위원회)이다.

이중 요지작성이 아닌 속기록이나 녹음기록을 공개하는 경우는 국무총리 참석 회의 전체 20건 중 4건(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자원봉사진흥위원회, 중앙안전관리위원회)뿐이다.

회의록을 비공개하는 8건의 회의 중 비공개 사유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제1호, 제2호, 제5호, 제6호 등이 해당하였으며, 이 중 제5호(과정 중)와 제6호(개인정보)가 가장 많았다. 다만, '산업기술보호위원회(산업통상자원부)'는 비공개 사유를 정보공개법에 조항으로 기재하지 않고 국가핵심기술 수출승인 등 기업의 영업비밀 내용 포함 및 국가안보 영향 등 심의라고 기재하였다.

〈표 6〉 '국무총리가 참석하는 회의(20건)'의 회의 형태, 회의록 작성 형태, 공개여부

대상회의	회의 형태			회의록 작성형태			공개 여부	비공개 사유
	서면	대면	알수없음 (회의수)	요지 작성	속기록	녹음 기록		
녹색성장위원회			13	○	○	○	비공개	2, 6
중앙민방위협의회	1						비공개	2
중앙안전관리위원회	9	7			○		부분공개	
유비쿼터스도시위원회	2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	8	4			○		공개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	3	3		○			공개	
국가과학기술심의회	2	12		○	○		비공개	5, 6
원자력진흥위원회		4			○		비공개	1, 5, 6
사회보장위원회			14	○			공개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5	7		○		○	공개	
아동정책조정위원회			5	○			공개	
바이오안전성위원회	2							

산업기술보호위원회			10	○			비공개	
양성평등위원회	2	3		○		○	비공개	5, 6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4	3		○		○	비공개	5, 6
6·25전쟁남북피해진상규명및남북피해자명예회복위원회	14	8				○	비공개	6
서해5도지원위원회	4							
자원봉사진흥위원회	3	1		○	○		공개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	4							
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지원위원회	0	0						

‘차관급 이상 구성원인 회의의 회의 형태’를 <표 8>에서 보면, 회의를 서면/대면으로 구분하지 않고 회의수만 제공한 경우 8건, 자료를 공개 받지 못한 경우가 3건(국가인권위원회 전원회의, 소비자정책위원회, 보건 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다. 서면회의보다 대면 회의가 많은 경우는 5건(국가교통위원회,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 정보공개위원회,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위원회, 남북관계발전위원회)이다. 이 중 정보공개위원회는 대면 회의만을 진행하였다. 서면회의만 진행한 경우는 2건(도서개발심의위원회, 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이다.

차관급 회의는 다른 회의유형보다는 속기록 작성형태의 회의록 작성이 많은 것이 특색이다. 구체적으로 회의록 작성 형태를 보면, ① 요지작성만 하는 경우 1건(생명공학융합정책심의회), ② 속기록만 작성하는 경우 8건(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위원회,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위원회, 남북관계발전위원회, 경제관계장관회의,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시도경제협의회), ③ 녹음기록만 작성하는 경우 0건, ④ 요지작성, 속기록으로 작성하는 경우 4건(고용정책심의회, 기부심사위원회,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 외국인투자위원회), ⑤ 요지작성, 녹음기록으로 2건(정보공개위원회,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어업인등 지원위원회), ⑥ 속기록, 녹음기록으로 작성하는 경우 1건(국가교통위원회), ⑦ 세 가지 형태를 모두 작성하는 경우 0건,

⑧ 서면회의만을 진행하여 회의록 형태가 없는 경우 2건(도서개발심의위원회, 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이 있다.

공개여부를 보면, 회의록을 공개하는 회의는 2건 (기부심사위원회, 정보공개위원회)으로 이 회의들은 요지와 속기록, 녹음기록도 공개로 정하였다.

부분공개는 없고, 비공개는 14건이다. 비공개 사유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제5호, 제6호, 제7호 등이 해당하였으며, 이 중 제5호(과정 중)와 제6호(개인정보)가 가장 많았다. 외국인투자위원회(산업통상자원부)는 자체 시행령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제21조(영업비밀관련정보 대외공개 금지)’ 안건이 개별기업 경영상의 비밀정보를 다루는 경우가 많아 비공개한다는 사유를 기재하였다.

〈표 7〉 차관급 이상 구성원인 회의(23건)의 회의 형태, 회의록 작성 형태, 공개여부

대상회의	회의형태			회의록 작성형태			공개 여부	비공개 사유
	서면	대면	알수없음 (회의수)	요지 작성	속기록	녹음 기록		
고용정책심의회	16	10		○	○		비공개	5
소비자정책위원회			자료없음					
국가인권위원회 전원회의			자료없음					
국가교통위원회	2	28			○	○	비공개	5, 6
경제관계장관회의			282		○		비공개	5
시도경제협의회			14		○			5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위원회	9	6			○		비공개	6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위원회	3	7			○		비공개	5, 6
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	3	1		○			비공개	5, 6
방위사업추진위원회			63		○		비공개	2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자료없음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			2		○		비공개	6
경제자유구역위원회			33	○			비공개	7
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	1							
외국인투자위원회			46	○	○		비공개	
항공우주산업개발정책심의회			4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31	2			○		비공개	2, 6
남북관계발전위원회	1	3			○		비공개	2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어업인등 지원위원회			6	○		○	비공개	5
기부심사위원회	14	3		○	○		공개	5
도서개발심의위원회	2							
정보공개위원회		8		○		○	공개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	1	23		○	○		비공개	6

개별법, 특별법에 따른 회의는 28건이 분석대상이었으나 이중 ‘수산생물 질병방역협의회’는 2017년에 폐지되었고 ‘공정거래위원회 전위원회’는 공개 받은 자료가 없어 분석에서 제외한다.

회의형태를 보면, 서면인지, 대면인지 구분하지 않고 회의수가 있는 경우가 16건으로 다수여서 서면, 대면의 분석이 거의 무의미하지만 분석하면, 대면만으로도 이루어진 회의가 4건(국가기록관리위원회,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 중앙도로명주소위원회, 기록물평가심의회), 서면만 이루어진 회의는 1건(농축산물무역정책심의회)이다.

회의록 작성 형태를 보면, 26건의 회의 중 22개 회의가 회의록으로 요지 작성을 하고 있어 다른 국무총리, 차관급 회의에 비해 회의록 작성 자체는 비교적 잘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요지를 작성하고 있는 22건 중 요지작성과 함께 속기록을 작성하는 경우는 10개 회의이며, 요지작성과 녹음기록을 작성하는 경우는 5개 회의, 세 가지 형태를 모두 기록하는 경우는 1건(원자력안전위원회)이다.

회의록 공개여부를 보면, 회의록을 공개하는 회의는 4건(원자력안전위원회, 학자금지원제도심의위원회,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무역위원회)이다. 그러나 회의록을 공개하는 4건의 회의 중 3건은 요지작성만을 기록하며, 원자력안전위원회만 요지작성과 속기록, 녹음기록을 하였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경우, 회의는 원안위 출범(11년10월) 이후부터 현재(17년5월)까지 총 69회 개최되었는데, 회의록(속기)은 원안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고 하였다.

부분공개하는 회의는 4건(국가기록관리위원회, 기록물공개심의회, 기록

물평가심의회, 함정 항공기등 규격 및 장비선정 심의위)이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의 경우는 요지작성은 공개하고 의사록은 비공개한다.

공개, 부분공개하는 회의들도 요지작성은 공개할 수 있으나 속기록이나 녹음기록은 공개하기 꺼려함을 알 수 있다.

개별법, 특별법에 따른 회의 가운데 회의록을 비공개하는 회의는 10건이며, 비공개 사유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 제5호, 제6호, 제7호 등이 해당하였으며, 역시 제5호와 제6호가 가장 많다. 비공개 사유로 제7호(경영상, 영업상 비밀)가 다른 국무회의, 차관급 참석회의보다 많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정보공개법 비공개 사항이 아닌 개별 법률에 근거하여 비공개하고 있었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의결서 작성 등) 제2항, 『금융위원회 운영규칙』 제11조(회의록) 제7항 및 『증권선물위원회』 제8조(의사록) 제7항에 의거 속기록을 근거로 주요내용을 요약한 의사록을 작성하였다. 재판·수사, 금융시장안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항 등을 제외하고 회의 종료후 2개월 이내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하였다. 『금융위원회 운영규칙』 제11조(회의록) 제5항 및 『증권선물위원회』 제8조(의사록) 제5항에 의거 속기록은 비공개로 하였다. 단 국회·감사원·사법기관 등에서 관련 법률에 의한 적법한 절차를 통해 요구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증선위) 의결을 거친 후 제출한다고 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 전원회의’도 역시 공개여부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며, 정보공개법 상의 비공개 사유가 아닌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이 규정하고 있는 ‘공개하면 국가안전보장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로 분류되거나 공개가 제한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공개하면 개인·법인 및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사·인사관리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하면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의 비공개 사유를 따른다고 하였다.

〈표 8〉 '개별법, 특별법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 심의회 등이 운영하는 회의(28건)'의 회의 형태, 회의록 작성 형태, 공개여부

대상회의	회의형태			회의록 작성형태			공개 여부	비공개 사유
	서면	대면	알수없음 (회의수)	요지 작성	속기록	녹음 기록		
공정거래위원회전원회의								
학자금지원제도심의위원회	4	12		○			공개	
승강기사고조사판정위원회			43	○		○	비공개	4, 6
함정 항공기등 규격 및 장비선정 심의위			3	○			부분공개	6
국방부 정책회의			48		○	○	비공개	2, 5
군무회의			15		○	○	비공개	2, 5
특수임무수행자보상 심의위원회			88	○		○		2
금융위원회			267	○	○		비공개(속), 공개(의)	개별
증권선물위원회			211	○	○		비공개(속), 공개(의)	개별
농축산물무역정책심의회	20							
중앙농업·농촌및식품 산업정책심의회	10	1			○		공개	
축산발전심의위원회	12	4		○			비공개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 심의위원회			33	○			비공개	5, 6
방송통신위원회 전원회의			594	○	○		알수없음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194	○			공개	
무역위원회			99	○			공개	
청소년보호위원회			95	○	○		비공개	5, 7
원자력안전위원회			69	○	○	○	공개	
공무원연급급여재심위원회			40	○		○	비공개	5
공무원연급운영위원회			12	○			비공개	7
순직보상심사위원회			13	○		○	비공개	5
수산생물질병방역협의회 ('17년 폐지)								
국가기록관리위원회		17		○	○		부분공개	5
기록물공개심의회	8	13		○	○		부분공개	5
기록물평가심의회		4		○	○		부분공개	5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		15		○	○		비공개	5
중앙도로명주소위원회		11		○	○		비공개	5
행정협의조정위원회	2	8		○	○		비공개	7

6. 지정회의 운영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중앙행정기관의 지정회의 현황, 지정회의 대상 회의의 개최, 회의록 생산, 회의록 생산 형태, 공개 유무와 비공개 사유 등을 살펴보고, 그 결과 크게 4가지 측면의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첫째, 지정회의를 정하는 것에 대한 문제다. 지정회의는 『공공기록물관리법』 제18조 제2항에 의거하여 영구기록물관리기관(국가기록원)의 장이 지정하는 회의이지만, 해당 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기관 동의 시에는 지정을 추진하고, 기관 부동의 시에는 이견조정을 통해 지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국가기록원 2009a; 2009b). 그런데, 분석결과를 보면, 한 번도 개최되지 않은 회의, 대면회의는 개최되지 않고 서면회의만 있는 회의가 있다. 회의록, 속기록을 작성, 관리하는 하도록 지정회의로 정하여졌을 때에는 그만큼 중요한 회의이기 때문에 지정되었을 것이 상식적인데 한 번도 개최되지 않았다거나 서면회의만 있었다는 것은 과연 지정회의로 정하여 질 만한 회의였을까? 라는 의문이 제기된다. 따라서 지정회의를 정할 시, 속기록을 공개하면 국가안보, 외교활동 등을 침해할 가능성이 많은 경우 등의 지정회의로 지정되지 않아야 하는 기준 등을 명확히 하여 정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서면회의일 경우, 회의록 작성에 관한 문제다. 서면회의만 있을 경우 회의록을 따로 작성하지 않아 회의록이 없다. 서면일 경우에도 결정된 바가 있을 것임에도 내용을 정리하지 않는다는 것은 의사결정은 있으나 그 내용이 기록되지 않는 것이다. 회의는 있으나 기록은 없다. 따라서 필요한 경우 서면회의를 하는 것은 가능하나 서면회의 일지라도 간단한 결과보고서가 아닌 회의록과 준하는 수준으로 그 서면사항에 대한 기록을 정확히 남기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 회의록 형태 가운데 요지작성 선호다. 또한 회의록을 공개, 부분공개하는 회의록 형태를 보면, 요지작성은 공개할 수 있으나 속기록이나 녹음기록은 공개하기 꺼려하였다. 발언한대로 기록하는 속기록이나 녹음된 내

용을 기록하는 녹음기록의 경우 비공개 사유에 해당한다면 비공개할 수 있으나 애초에 회의록 작성 시부터 속기록이나 녹음기록을 남기지 않고 요지작성만을 남기는 것은 문제다. 법 규정으로 지정회의의 경우 회의록과 함께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을 생산하도록 강제하고 있으나 지켜지고 있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지정회의 진행 절차 안에 요지작성과 함께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 작성이 반드시 이루어져할 사항으로 문구화하여 속기록, 녹음기록 작성이 정착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비공개 사유 관련 하여, 비공개 사유는 보통 정보공개법의 비공개 조항이 사유가 되었고, 세 가지 회의 유형 모두 정보공개법 제9조1항 제5호, 제6호가 가장 많은 비공개 사유가 되었다. 내부의사결정에 발생하는 정보를 알고, 국정운영에 책임성을 높이고자 회의록을 작성하는데 회의록 비공개 사유에 다시 제5호가 많이 언급되는 것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 비공개 되어야 할 회의, 회의록은 비공개로 철저히 관리되어야 하나 공개 가능한 회의록이 비공개 되지 않도록 비공개 되는 절차나 사유에 대한 보다 명확한 기준과 절차가 마련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는 회의 기록의 생산과 공개에 관해 단지 『공공기록물 관리법』의 부분으로 제17조와 동법 시행령 제18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비해 미국은 회의록 생산과 공개를 넘어 회의공개에 대해 회의공개법으로 규정하고 있고 있다. 또한 동법은 비공개되어야 할 회의는 투표로 결정해 투표와 관련된 사항과 결과를 공개해야 함을 포함한다. 세월호, 메르스 사태에서 경험하였듯이 국민의 공적 의사결정과정에 관한 알 권리 차원에서 회의록 생산과 공개뿐만 아니라 향후 회의공개에 대한 입법화가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7. 맺는 글

우리나라 법령은 회의록 생산과 관리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하지만

회의공개에 관한 구체적 규정은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다. 회의공개법이 없으므로 정부기관은 회의를 공개할 의무가 없고, 회의록도 존재하지 않거나 관리되지 않고 있다. 2012년 서울시에서 100여 개 회의의 정책결정과정을 인터넷 생방송, 회의록 등으로 공개하겠다고 시도하였으나 불발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회의록 생산과 관리에 대한 운영을 살펴보고자 지정회의 대상 회의의 개최, 회의록 생산, 회의록 생산 형태, 공개 유무와 비공개 사유 등을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회의록을 작성할 의무가 있는 지정회의로 정해졌을 때에는 해당 기관의 중요한 회의임을 짐작할 수 있으나 회의 개최가 아예 없는 경우도 있었고, 서면회의로 이루어져 회의록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회의록 형태로 더 많은 내용을 담은 속기록, 녹음기록보다는 요지작성이 더 많았고, 공개도 요지작성 공개가 더 많았다.

현재 회의록 작성 의무가 있는 회의는 지정회의이다. 그러나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법으로 정하여진 회의조차 회의록이 제대로 작성되고 관리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회의록 작성 및 관리 의무 대상의 확대되어야 하고, 지정회의 운영에 대한 관리, 감독의 강화되어야 한다. 지정회의가 아니더라도 모든 회의는 기록되어야 한다.

회의록은 충실히 작성, 관리되어야 한다. 다수 회의록이 요지 작성의 형태로만 남는다. 회의내용이 충실히 기록될 수 있도록 회의록 작성 서식이 표준화하여야 한다. 회의 정보에 대한 과도한 보호는 민주행정, 투명 행정의 원칙에 위배된다. 궁극적으로 회의록 생산과 관리가 아닌 회의 공개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국가기록원. 2009a 속기록 등 작성대상 추가 지정 계획(안).

국가기록원. 2009b. 속기록 작성회의 지정관련 의견조회.

- 김승두. 2018. 전 정부 4대강·자원외교 기록관리 영망…폐지업체 불러 폐기도. 연합뉴스. 2018.1.10. <<http://www.yonhapnews.co.kr/dev/9601000000.html>>.
- 김장환. 2013. 국회 비공개회의록 및 불계재 부분의 공포 방안 연구. 『기록학연구』, 35, 93-132.
- 손태규. 2015. 왜 한국에도 회의공개법이 필요한가. 『공법학연구』, 16(1), 163-186.
- 윤대근, 남태우. 2011. 국회 회의록의 관리체계에 관한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1(2), 143-163.
- 이혜진, 정은경. 2012. 공공기관의 회의록 생산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2(3), 137-153.
- 변주연. 2008. 공공기관의 회의록 생산, 공개 제도화 연구: 미국의 회의공개법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기록학연구』, 17, 203-245.
- 참여연대. 2011. 이명박 정부 정보공개제도 운영 모니터 보고서. 2011. 참여연대 이슈 리포트 제2011-11.
- 행정자치부. 2017. 2016 정보공개연차보고서.